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87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5월 30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시의회사무처 국장급 기구 설치 및 서울시립대학교 우수교원 확보에 대응하고,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총정원 변동없이 시의회사무처 국장급 기구 정원 및 서울시립대학교 교원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상계 조정

- 일반직 5급 이하 정원 △12명
- 의회사무처 3급 정원 +1명, 직속기관 교수 등 정원 +11명

나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(대통령령)」 개정('25.6.2.)에 따라 [별표 5] 중 '기술서기관'을 '과학기술서기관'으로 개정

- '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'을 '소방정 또는 과학기술서기관'으로 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- (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
(정원의 규정), 별표 2(시·도에 두는 보조·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등)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해당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첨부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해당없음
- 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협의 사항:
협의 완료

라. 기 타
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도 첨부
- (2) 입법예고('25. 5. 22. ~ 5. 27.) 결과: 의견제출 없음

※ 작성자 :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심연수(☎ 2133-6729)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10,520명”을 “10,509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554명”을 “565명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“별표4”를 “별표 4”로 한다.

별표 4의 일반직 계란, 3급란, 5급 이하 소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일반직 계	10,689					
-------	--------	--	--	--	--	--

3급	27	16	1	1	9	
----	----	----	---	---	---	--

5급 이하 소계	10,193					
----------	--------	--	--	--	--	--

같은 표 교육공무원 계란, 교수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교육공무원 계	565					
---------	-----	--	--	--	--	--

교수 등	487			487		
------	-----	--	--	-----	--	--

별표 5의 구분란 중 “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소방정 또는 과학기술서기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서울특별시에 두는 공무원(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 정원의 총수는 19,17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부터 제7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): <u>10,520명</u>	1. ----- ----- -----: <u>10,509명</u>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서울시립대학교에 두는 교육 공무원의 정원: <u>554명</u>	3. ----- -----: <u>565명</u>
4. ~ 7. (생략)	4. ~ 7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직급별 정원) ①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<u>별표4</u> 와 같다. 다만, 본청과 사업소간에 1급 일반직 임명에 따른 3급이상 일반직 정원은 관리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	제4조(직급별 정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별표 4</u>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[별표 4]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제1항 관련)	[별표 4] ----- ----- -----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- 비용발생 요인 : 시의회 국장급 기구 정원 및 서울시립대 교수 정원의 확보를 위하여 총정원 변동없이 직급 간 정원을 조정
- 비용추계의 전제 : 2025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향후 5년 소요인건비 추계
-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						
지출	○ 인력운영비	-32,191	-66,313	-68,303	-70,352	-72,463	-309,622
	○ 기타 운영비	206,714	413,428	413,428	413,428	413,428	1,860,426
	소계(a)						
수입	○						
	소계(b)						
□ 총 비용(a-b)		174,523	347,115	345,125	343,076	340,965	1,550,804

※ 인력운영비는 매년 인건비 상승률 3.0%('25년 기준) 적용 추계

※ 1차년도는 시행일 2025년 7월(6개월)을 기준으로 추계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						
국비							
시비	지방세수입	-2,137	-6,205	-8,195	-10,244	-12,355	-39,136
	세외수입						
	지방채 등						
민간							
기타		176,660	353,320	353,320	353,320	353,320	1,589,940
합계		174,523	347,115	345,125	343,076	340,965	1,550,804

5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6. 작성자 :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심연수 주무관(02-2133-6729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정원 변동내역 : 총정원 변동없음

○ 일반직(관리운영직 외) △3

- 3급 +1, 6급 △4

※ 6급 직렬 : 시설관리직

○ 관리운영직 △8

- 7급 △4, 8급 △4

○ 교 원 +11

- 조교수 +11

2. 비용소요 추계(1차년도 12개월 기준) : 349,046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소요비용	세 부 내 역
합 계	349,046	◆ 총 계 : 349,046 [인력운영비 1차년도 12월 기준 계] : -64,382 ▷ 일반직 3급(+1) : $118,172 \times 1\text{명} = 118,172$ ▷ 일반직 6급(△4) : $81,153 \times \Delta 4\text{명} = -324,612$ ▷ 관리운영직 7급(△4) : $78,952 \times \Delta 4\text{명} = -315,808$ ▷ 관리운영직 8급(△4) : $69,778 \times \Delta 4\text{명} = -279,112$ ▷ 교원 조교수(+11) : $66,998 \times 11\text{명} = 736,978$ ※ 인력운영비 : 기본급, 수당 등 포함 [기타 운영비 1차년도 12월 기준 계] : 413,428 ▷ 3급(+1) : $14,700 \times 1\text{명} = 14,700$ ▷ 교원 조교수(+11) : $36,248 \times 11\text{명} = 398,728$ ※ 기타 운영비 : 업무추진비, 직책급,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비, 연구보조비 포함